

	논문편집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1986. 3. 1.
		최종개정일자	2014. 6. 23.
		담당부서	학사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논문집의 발간과 편집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문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4.6.23>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2014.2.6>
 ②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사지원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4.2.6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논문 편수의 결정과 배정
2. 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회에 관련된 중요사항

제4조(회의)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2014.2.6>

제5조(발간횟수) 논문집은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원고매수) 원고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단, 필요한 경우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교정) 제출된 원고는 본인이 직접 교정을 보아야 한다.

제8조(별쇄) 별쇄본은 저자에게 편당 10부를 증정한다. 다만, 그 이상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.<개정2014.2.6>

제9조(논문의 작성 및 투고) 원고의 체제 등 논문의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논문의 심사)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게재할 논문의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1조(투고자격) 투고 자격은 대학 재직자에 한 한다. 다만, 공동저자는 재직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.

제12조(예산)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학 재직자가 아닌 공동저자는 소정의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특례) 대학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공적이 뚜렷하여 회갑 또는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을 대학 논문집으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 단서 조항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그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계획은 본 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교무위원회의 심의 .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14조(경과조치) 논문집 원고작성 · 편집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2014.2.6>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